

『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 수집·운반 대행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용어정의, 적용 범위, 평가원칙에 관한 사항.(안 제2조 ~ 안 제4조)
- 평가지침, 평가계획, 평가실시 등 평가절차와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.(안 제5조 ~ 안 제9조)
-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회의운영,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.(안 제10조 ~ 안 제16조)
- 평가결과 정책반영 및 조치에 관한사항.(안 제17조 ~ 안 제18조)
-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에 관한 사항.(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2항, 제6항(법률 제10389호, 2010.7.23)
 - 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」 제15조의3

- 입법예고 : 2013. 1. 9 ~ 1. 29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.(2013.2.12)

5. 검토의견

□ 본 제정 조례 안은,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6항 신설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, 매년1회 이상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그 주요내용으로는,
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(제5조)하고, 연1회 이상 현장평가,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,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고 구미시 인터넷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.
- 또한, 8명 이상 11명 이하의 평가자문위원회(위원장: 부시장)를 구성·운영하여 평가지침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세부적인 평가지침 및 관련규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하고,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, 대행업체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청소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